
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(약칭: 연구실안전법)

[시행 2016.9.23.] [법률 제14079호, 2016.3.22., 타법개정]



미래창조과학부(연구환경안전팀) 02-2110-2785

제18조(교육 · 훈련 등)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 ·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. <신설 2011.3.9., 2013.3.23., 2014.12.30.>

④ 연구주체의 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3.9.>

⑤ 제4항의 건강검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11.3.9., 2013.3.23.>

⑥ 연구활동종사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과 규범 등을 준수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3.9.>
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약칭: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)

[시행 2017.1.1.] [미래창조과학부령 제88호, 2016.12.30., 일부개정]



미래창조과학부(연구환경안전팀) 02-2110-2785

제9조(교육 · 훈련의 시간 및 내용) ① 연구주체의 장이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 · 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. <개정 2011.9.9., 2015.7.1.>
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의 교육시간, 내용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. <신설 2011.9.9., 2015.7.1.>

[별표 2] <개정 2016. 12. 30.>

연구활동종사자 교육·훈련의 시간 및 내용(제9조제1항 관련)

교육 과정	교육 대상		교육 시간	교육 내용
1. 신규 교육·훈련	근로자	가.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	8시간 이상 (채용 후 6개월 이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•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•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• 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•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
		나.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	4시간 이상 (채용 후 6개월 이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•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•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	근로자가 아닌 자	다. 대학생, 대학원생 등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	2시간 이상 (연구 개발 활동 참여 후 3개월 이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•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• 안전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 •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•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
2. 정기 교육·훈련	가.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에 근무하는 연구활동종사자		반기별 6시간 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•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
	나.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에 근무하는 연구활동종사자		반기별 3시간 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안전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 •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•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

			에 관한 사항 •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3. 특별안전 교육 · 훈련	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실에 근무하는 연구활동종사자	2시간 이상	•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• 안전한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사항 •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•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비고

- 제1호에서 "근로자"란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.
- 연구주체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신규 교육 · 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반기의 정기 교육 ·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.
- 제2호의 정기 교육 · 훈련은 사이버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득점한 사람에 한정하여 교육 이수를 인정한다.